

의안 번호	2256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2.(목)
- 제출자: 이명녀 의원 외 8명
- 위원회 회부일자: 2023. 5. 2.(목)
- 위원회 심사일자: 2023. 5. 17.(금)

2. 제안설명 요지(이명녀 의원)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중구 내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비밀준수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다.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제38조
- 「청소년복지법」 제3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동학)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이 지역공동체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과 예산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

-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가결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8. 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